

310 청렴계약제 시행세칙

청렴계약제 시행세칙

제정 2011.10.25.

개정 2016.1.1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예산회계규정 제64조 제3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도적으로 부패와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청렴계약제”라 함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각종 구매·제조·공사·용역 등 계약(5백만원 이상) 전반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 이행 특수조건을 서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구매 등 계약”이라 함은 해당부서에서 지출결의로 계약요청한 500만원 이상의 구매·제조·공사·용역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렴계약제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대상)

위원회가 발주하는 5백만원 이상의 구매·제조·공사·용역에 대한 모든 계약업무에 적용된다.

제5조 (시행방법)

- ① 계약업체에서는 5백만원 이상 구매·제조·공사·용역에 대한 납품완료시 별지 1호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위원회에서도 계약담당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위원회교부용)를 작성하여 계약업체에 제출한다.
- ③ 일반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1천만원이상)에 의하여 선정된 계약업체는 계약서 작성시 별지 1호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별지 2호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청렴계약제의 내용)

위원회와 계약업체는 청렴계약제 의무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금지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계약업체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② 계약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계약업체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직원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 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직원들은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못한다.
- ⑥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7조 (청렴계약 위반심의회)

- ①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심의회위원회에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요청하고, 계약심의회위원회에서는 위반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청렴계약 위반혐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
 - 2. 위반혐의 내용이 제6조의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3.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이 연계 되었는지 여부 등
- ③ 제1항의 경우 청렴계약위원회에서는 해당 직원 및 계약업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청렴계약 위반시 제재 등)

- ① 위원회는 계약업체 및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1. 제6조 1~3호 위반 : 계약 위반업체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계약위반업체와 계약체결 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적발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 2. 제6조 4~6호 위반 : 위원회의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거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원회 교부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무관리부 ○ ○ ○ (인)

[별지 2호]

(계약서첨부용)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한다)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 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